

평이한 수능... 국어·수학 예상 1등급컷 오를 듯

N수생 21년만 최다... '눈치싸움' 1등급컷, 1~2문제는 더 맞아야 국·수 표준점수 최고점도 하락 탐구는 어렵게... 중요 변수 전망

의과대학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몰린 가운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대혼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들의 가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의 1등급 커트라인(구분점수)이 원점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의학 계열 등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국어·수학에서 고득점 동점자가 밀집해 정사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7일 EBSi·메가스터디·이투스·유웨이·종로학원 등 입시업계의 가채점 결과를 종합한 결과,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의 1등급 커트라인은 93~95점(원점수 기준)으로 지난해(88점)보다 5~7점 높게 추정됐다.

'언어의 매체'는 91~93점으로 지난해(84점)보다 7~9점 상승했다.

두 부문 모두 1등급 커트라인이 높아지면서 상위권 학생의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보다 2~4개 문제를 더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학 영역 역시 1등급 추정 커트라인이 상승할 전망이다.

'확률과 통계'는 92~94점으로 지난해(94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미적분'은 85~88점으로 지난해(84점)보다 1~3점 높아져 수학도 한 두 문제는 더 맞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대학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 점수 최고점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점수는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로,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지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진다.

입시 업계는 올해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을 135~140점으로 예측하고 있다. '불국어'로 불린 지난해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으나, 올해는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이었던 수학은 139~145점으로 예측됐다.

과학탐구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각각 2점, 5점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영어영역이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가운데 수학과 국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고, 탐구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수학·탐구 영

역이 대입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키'가 될 전망이다.

1등급 커트라인이 오르고 표준점수 최고점이 떨어진 것은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 배제 기조가 이어지며 준킬러문항(중고난도 문항)도 보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EBS가 14일 수능을 마치고 수험생들

을 대상으로 제감난이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3085명 가운데 40.8%가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해 '약간 어려웠다'고 답했다. '보통이었다'는 항목에 응답한 수험생은 26.0%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능을 마치고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50.3%가 '매우 어려웠다'고 응답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수험생들에게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로 쉽게 느껴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은 국어보다 수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어렵게 출제된 탐구 영역이 대입 합격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수능 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 수능보다 낮아져 국어·수학 고득점 동점자가 밀집, 정사에서 과목 점수를 유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입시전형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이 지난 1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교육청 주최로 열려 광주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이 마을교육공동체, 기후위기비상행동실천단, 학부모동아리 등에서 마련한 59개 체험 및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전남대, 의대생 740명 중 653명 집단휴학 승인

조선대도 540여명 휴학계 승인

광주·전남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했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의과대학장과 총장 결재를 거쳐 의대 재적 학생 740명 가운데 653명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 2월20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학생들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로 승인하기로 입장을 밝

히면서 전남대의대생들은 개인적 사유로 휴학계를 제출, 대학은 이를 승인했다.

의대 휴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약 20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남대는 학생들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등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대학교도 조만간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 의대는 재적 749명 중 540여명이 휴학계를 대학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들의 휴학 승인은 총장의 결재만 남은 상황으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음주 후 경찰과 추격전...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28% 만취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경력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추적하는 경찰로부터 도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을 하는 등 추격전을 벌인 40대 음주운전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

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0시50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곧바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해오자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곡예운전을 서슴치 않았다.

그렇게 1.5km를 운전하던 A씨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대 있는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인 만취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인명피해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전남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 출근길 '영하권 추위'

광주·전남 지역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담양, 곡성, 구례, 장성, 순천, 완도, 영광 등 전남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신안, 진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목포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다.

광주·전남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18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3

도, 낮최고기온은 8~11도가 되겠고, 19일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6도, 낮최고기온은 11~15도로 전망됐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1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전남 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20%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보됐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지며 급격히 추워지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삼아 기자



법원, 관행대로 규정 위반한 법인 시설장 '해임 부당'

집단 과오 개인에 책임 묻기 가혹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온 곡성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각종 비리를 근거로 산하시설장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곡성 소재 A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 2021년 물품반출, 명령불복 및 근무태만, 직장 내 괴롭힘, 직원 명예훼손 및 모욕,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임 징계를 내렸다.

B씨는 A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대 이사장의 아들이다. 지난 2007년 입사한 뒤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B씨의 고모로 이사장이 교체됐고 B씨에게 7가지의 징계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직원들의 허위·왜곡 진술에 따라 생긴 징계사유로,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관행에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내용과 혼재돼 있고 해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원고가 해임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이사장 취임 전까지 6년여간 B씨의 언행 또는 근무태도 등에 대한 지적·개선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징계 처분 사

유도 원고의 비위사실에 비해 과도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한 '징계권남용'에 해당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법원은 B씨에게 적용된 다수의 징계 사유 중 가족들에 대한 구내식당 무료 식사 제공, 직원에게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법인차량을 사적 유용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근무태만이나 직원 대상 폭언 등 다른 징계 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가족경영 체제로 운영돼 왔기에 서로의 묵인하에 여러 법령, 규정 위반이 누적돼 있다가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릇된 관행을 전부 B씨의 과오로 몰아 해임하기보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 행위들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